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3. 17 선고 2020가단35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2. 17

판결 선고 2021. 3.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6. 1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나.피고는 소외 D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7. 7. 26. 접수 제14767호로마친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3. 28. E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 원을 신차할부를 위하여

대출기간72개월,대출이율 5.9%, 지연이율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기 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E 주식회사는 위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17111호로 "D는 E 주식회 사에게 17, 673, 103원 및 그 중 17,415,553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12. 13. 지급명령을 하였는데,이는 2017. 4. 5. D에게 송달되었고,2017. 4. 19. 확정되었다.

마. E 주식회사는 2018. 9. 1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위 D에게 채권양도통 지를 하였다.

바. 한편,D의 부친인 F은 2017. 6. 10. 사망하였고, 위 F의 상속인들 및 피고, D는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상속계약 을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7.7. 26. 접수 제14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F은 처로 피고 C를 두고 있고, 그 자녀로는 D, G, H, I을 두고 있다.

자. D는 위 상속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 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 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 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D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달리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7. 7. 26. 접수 제14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채무를 몰랐고, 위와 같은 협의분할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악의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D의 모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판결 한다.

판사 김주완

별지